

의안번호	2200106
의 퇴 인	김성회의원
회 답 일	2024. 07. 08.
추계번호	24D042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800만원, 2029년 1,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18	18	18	18	18	90	18

주: 1.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일부를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유사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참고하여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을 13명,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개최, 회의참석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25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 및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 및 특례시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의무규정
2	안 제8조(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3	안 제11조(영향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5조(연구기관의 지정)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2조(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3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4조(특례부여 및 지원)	특례시장장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특례시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행정안전부 및 특례시의 기존 인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안 제8조(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유사사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례 등)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11조(영향평가)	X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4	안 제15조(연구기관의 지정)	X	연구기관의 지정 여부, 지정된 연구기관의 특례시 관련 연구 범위와 내용,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5	안 제12조(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X	특례시의 지역개발 규모,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내용과 범위,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6	안 제13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에 관한 특례)	X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의 범위와 내용, 해당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7	안 제14조(특례부여 및 지원)	X	특례시의 특례부여 요청 여부, 특례부여 받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내용,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특례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 및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되,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한정
 - 회의 운영을 위한 인쇄비 등은 담당 부서 경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본 추계에서는 지원위원회를 총 27명(민간위원 13명), 실무위원회를 총 25명(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분기별로 각각 1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지원위원회 27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중을 50%로 가정
 - 실무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참조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민간위원은 5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25만원으로 하고,¹⁾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800만원으로 추계됨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민간위원 18명(지원위원회 13명, 실무위원회 5명)에게 25만원씩 4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므로 연간 1,800만원(=18명×25만원×4회)

[표 2]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18	18	18	18	18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및 개최 횟수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